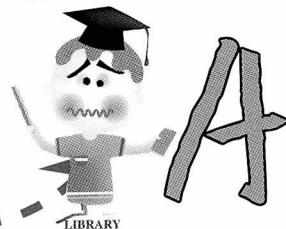




업 · 안 · 전 · 산 · 업 · 안 ·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1항에 의거 작업환경측정을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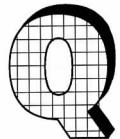
질문1) 석유화학공장은 어느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지(옥내사업장이 아님)

질문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2항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조정 횟수 신청이 가능한지요

- 화학물질 노출기준이 현재까지 50 % 미만

- 소음은 75 ~ 85dB 유지

단, 배관을 통하여 공정에 벤젠, AN, EO, SM을 공급함



**A**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장 및 코우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제외하고는 옥내작업장에 한정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단위공정에 서 측정대상인 빌암성 및 발암성 추정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근 3년간 당해 유해인자에 의하여 직업병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의 발생이 없으며, 최근 1년간 당해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으면 작업환경측정횟 수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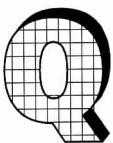


현재 크레인을 수입하여 수입통관 후 실질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합격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합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요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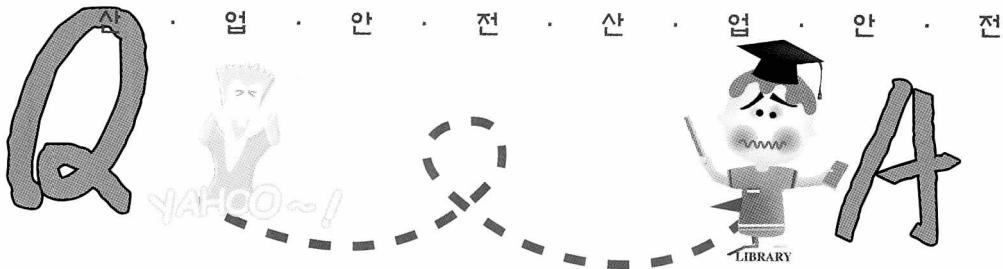


1. 크레인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 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크레인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여 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설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크레인은 수입, 대여 및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설계, 완성검사의 대상, 검사시기, 검사방법 및 검사신청 서류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58조 내지 제59조,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으로 금번 폭설로 인하여 우리 현장내 도로(기존 도로 아님)가 결빙이 되어 근로자 및 작업차량 등이 통행함에 있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염화칼슘을 구입하여 현장내 도로 및 작업구간에 살포를 하였을 때 염화칼슘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염화칼슘을 살포한 구간은 외부 일반차량의 출입이 없고 순수하게 당 현장의 작업차량 및 근로자만 통행하는 작업구간이며, 2000년 4월 7일자 노동부 질의회시의 노동부 답변을 보면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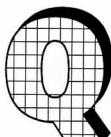
**A**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면적이 4.84m<sup>2</sup>으로 극히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와 비상발전기용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지정수량 미만인 옥내경유탱크저장소(탱크 내용적 : 600~950ℓ )는 주 1회정도 출입하는 곳으로 근로자가 상시근무하는 작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나 재해발생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 중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상구의 설치 목적을 고려 할 때 단순히 위험물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단독 건물로 존재하면서 근로자가 그 저장소내에 상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동 저장소내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행하는 옥내 작업장내에 또는 다른 건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저장소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전체 작업장내에 그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상구 설치에 관한 요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구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의 위험물 제조·취급실태 등을 규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안전관리자의 자택이 인천에 있어 안전관리자에게 일정 금액의 출장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항목에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지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출장비는 안전관리자 소속 현장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장기출장비는 인건비 항목의 업무수행 출장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